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 실시〉
■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4254호)

2023.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목 차

I. 개 요	1
II.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2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4

I . 개 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연숙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3. 9. 6.

(3) 회 부 일 : 2023. 9.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등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하였음.

그러나 신규간호사가 실무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함과 그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신규간호사는 채용 또는 보임 후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전담간호사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하여 신규간호사의 원활한 적응과 업무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신규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에 대하여 신규 채용 또는 보임 후 1년의 범위에서 교육전담간호사로부터 교육을 제공받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제3항 신설).

법률 제19421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개 정 안
제41조의2(교육전담간호사) ①·② (생략) <u><신 설></u> ③·④ (생략)	제41조의2(교육전담간호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은 <u>신규간호사등(간호사에 한한다)이 신규 채용 또는 보임 후 1년의 범위에서 교육전담간호사로부터 교육을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u>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시행일 : 2024년 5월 20일	

2. 검토의견

- 정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신규간호사 현장적응 및 임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왔음.

- 보건복지부는 1년 미만 전체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첫 해인 2019년에 23.5%였으나 2022년에는 20.0%로 감소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신규간호사 이직률을 약 3.5%p 감소시켰다고 평가하고 있음.¹⁾

□ 2023년 5월 19일 「의료법」 개정(시행일 : 2024. 5. 20.)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신규간호사등)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의무가 부여되었음.²⁾

□ 개정안은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 제41조의2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두는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교육을 제공하도록 명시하여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입법취지로 이해됨.

□ 다만, 시행예정 법률에 따르면 교육전담간호사의 직무는 ① 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운영·평가, ②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총괄 및 관리, ③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1) (2019년) 23.5% → (1차년도, '20년) 15.8% → (2차년도, '21년) 16.3% → (3차년도, '22년) 20.0%

* '21~'22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병원 전체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증가함

2) 「법률 제19421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2024.5.20. 시행 예정)

제41조의2(교육전담간호사) 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이하 “신규간호사등”이라 한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운영·평가
2. 신규간호사등의 교육 총괄 및 관리
3.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및 지도
4.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개발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 신규간호사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및 지도, ④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개발로 나열되어 있어 교육전담간호사외에도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을 상정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육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의료기관과 관련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기간의 세부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의견

- 교육전담간호사를 통해 신규간호사에게 충분한 교육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관계기관, 관련단체, 현장의견 수렴 및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병원 종별로 교육·훈련기간 등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기간 등의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에 위임할 필요가 있음.

2) 대한병원협회 의견

- 최근 개정된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환자특성별·부서별로 의료기관의 간호업무 차이와 신규간호사 개별 적응 능력 등의 차이로 교육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 또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내 타 직종 대비 간호사만을 특정하여 신규

채용·보임의 경우 실무 적응 교육과 교육기간을 법제화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함.

3) 대한간호협회 의견

- ☐ 개정된 법률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는 정확한 교육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교육 기간을 명시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4)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의견

- ☐ 법률이 교육전담간호사를 통한 교육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공감하나, 일률적으로 1년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할 근거가 부족한 바, 중소병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하위법령에서 그 기간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5)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견

- ☐ 교육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 간호사는 채용 또는 보임 후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전담간호사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규정한 개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4